

## 시설물 설치 시 유의사항

### □ 기본사항

1. 진흥원 요구 시 시설 내에서의 모든 작업은 신청자 명의의 작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작업 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한다.
2. 통로는 출입구 및 비상구와 직선으로 연결되어야 하며, 긴급 피난 시 방해가 되는 비품 등을 설치할 수 없다.
3. 장치물은 기존 시설물 벽면이나 이동식 칸막이 PANEL에서 50cm이상 떨어지게 설치하여야 하며, 기존 시설물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없다.
4.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의 벽면·천장·바닥에 천공이나 못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.
5. 공연·전시 등의 행사를 위해 반입하는 물품 중 소방법 시행령 제11조(특수장소의 방염)에서 정한 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하며, 사전에 방염필증을 진흥원에 제출하여 승인된 후 반입할 수 있다.
6. 대관시설 내외에 아치, 안내입간판, 현수막, 포스터, 전단지 등의 홍보·안내·광고 등의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물 내용, 수량, 장소 등을 작성하여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진흥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□ 전기·수도·압축공기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

1. 전시품 작동 및 국부조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공사, 급·배수시설 및 압축공기 배관 공사는 진흥원의 감독하에 사용자가 대관시설 내 해당 공급기에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.
2. 제1항의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### □ 전화 및 인터넷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

- 행사용 전화 및 인터넷은 진흥원이 지정한 업체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
### □ 천장 및 시설물의 높이 제한

1. 천장에는 전시 및 홍보용 물체 등을 설치할 수 없다. 다만 배너 등 경량물체인 때에는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수 있다.
2. 전시시설물 및 전시물은 그 특성에 따라 전시바닥으로부터 천장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.
3. 사용자는 긴급사태 발생 시 원활한 조치를 위한 비상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.
4. 사용자는 화재발생시 화재의 조기진압을 위하여 전시시설물 및 스탠드는 복층으로 설치할 수 없다.